

| 구분 | (계박시) | (2009.03.10) | | | | | | | | (2009.07.09) | (2009.11.10) | (2010.02.25) | (2010.05.10) | (2010.09.09) | (입주시정일) |
|----------|-------|--------------|--------------|--------------|--------------|--------------|--------------|--------------|--------------|--------------|--------------|--------------|--------------|--------------|---------|
| | | (2009.03.10) | (2009.07.09) | (2009.11.10) | (2010.02.25) | (2010.05.10) | (2010.09.09) | (2010.09.09) | (2010.09.09) | (2010.09.09) | (2010.09.09) | (2010.09.09) | (2010.09.09) | (2010.09.09) | |
| 109.207A | 1층 | 206,976 | 20,697 | 20,697 | 20,697 | 20,697 | 20,697 | 20,697 | 20,697 | 20,697 | 20,697 | 20,697 | 20,697 | 20,697 | 62,097 |
| | 2층 | 216,676 | 21,667 | 21,667 | 21,667 | 21,667 | 21,667 | 21,667 | 21,667 | 21,667 | 21,667 | 21,667 | 21,667 | 21,667 | 65,007 |
| | 기준층 | 226,476 | 22,647 | 22,647 | 22,647 | 22,647 | 22,647 | 22,647 | 22,647 | 22,647 | 22,647 | 22,647 | 22,647 | 22,647 | 67,947 |
| 109.244B | 1층 | 205,458 | 20,545 | 20,545 | 20,545 | 20,545 | 20,545 | 20,545 | 20,545 | 20,545 | 20,545 | 20,545 | 20,545 | 20,545 | 61,643 |
| | 2층 | 215,258 | 21,525 | 21,525 | 21,525 | 21,525 | 21,525 | 21,525 | 21,525 | 21,525 | 21,525 | 21,525 | 21,525 | 64,583 | |
| | 기준층 | 224,958 | 22,495 | 22,495 | 22,495 | 22,495 | 22,495 | 22,495 | 22,495 | 22,495 | 22,495 | 22,495 | 22,495 | 67,493 | |
| | 최상층 | 227,358 | 22,735 | 22,735 | 22,735 | 22,735 | 22,735 | 22,735 | 22,735 | 22,735 | 22,735 | 22,735 | 22,735 | 68,213 | |
| 109.290C | 1층 | 206,060 | 20,606 | 20,606 | 20,606 | 20,606 | 20,606 | 20,606 | 20,606 | 20,606 | 20,606 | 20,606 | 20,606 | 61,818 | |
| | 2층 | 215,860 | 21,586 | 21,586 | 21,586 | 21,586 | 21,586 | 21,586 | 21,586 | 21,586 | 21,586 | 21,586 | 21,586 | 64,758 | |
| | 기준층 | 225,560 | 22,556 | 22,556 | 22,556 | 22,556 | 22,556 | 22,556 | 22,556 | 22,556 | 22,556 | 22,556 | 22,556 | 67,668 | |
| | 최상층 | 227,960 | 22,796 | 22,796 | 22,796 | 22,796 | 22,796 | 22,796 | 22,796 | 22,796 | 22,796 | 22,796 | 22,796 | 68,388 | |
| 109.780D | 1층 | 208,049 | 20,804 | 20,804 | 20,804 | 20,804 | 20,804 | 20,804 | 20,804 | 20,804 | 20,804 | 20,804 | 20,804 | 62,421 | |
| | 2층 | 217,849 | 21,784 | 21,784 | 21,784 | 21,784 | 21,784 | 21,784 | 21,784 | 21,784 | 21,784 | 21,784 | 21,784 | 65,361 | |
| | 기준층 | 227,649 | 22,764 | 22,764 | 22,764 | 22,764 | 22,764 | 22,764 | 22,764 | 22,764 | 22,764 | 22,764 | 22,764 | 68,301 | |
| | 최상층 | 230,049 | 23,004 | 23,004 | 23,004 | 23,004 | 23,004 | 23,004 | 23,004 | 23,004 | 23,004 | 23,004 | 23,004 | 69,021 | |
| 109.218E | 1층 | 208,067 | 20,806 | 20,806 | 20,806 | 20,806 | 20,806 | 20,806 | 20,806 | 20,806 | 20,806 | 20,806 | 20,806 | 62,425 | |
| | 2층 | 217,767 | 21,776 | 21,776 | 21,776 | 21,776 | 21,776 | 21,776 | 21,776 | 21,776 | 21,776 | 21,776 | 21,776 | 65,335 | |
| | 기준층 | 227,467 | 22,746 | 22,746 | 22,746 | 22,746 | 22,746 | 22,746 | 22,746 | 22,746 | 22,746 | 22,746 | 22,746 | 68,245 | |
| | 최상층 | 229,867 | 22,986 | 22,986 | 22,986 | 22,986 | 22,986 | 22,986 | 22,986 | 22,986 | 22,986 | 22,986 | 22,986 | 68,965 | |
| 112.776P | 최상층 | 233,753 | 23,375 | 23,375 | 23,375 | 23,375 | 23,375 | 23,375 | 23,375 | 23,375 | 23,375 | 23,375 | 23,375 | 70,128 | |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천원)

| 구분 | 주택형 | | | | | | |
|---------|----------|----------|----------|----------|----------|----------|--------|
| | 109.207A | 109.244B | 109.290C | 109.780D | 109.218E | 112.776P | |
| 면적(㎡) | 26,783 | 31,056 | 30,038 | 26,306 | 22,104 | 27,730 | |
| 금 액(천원) | 1층 | 13,908 | 15,083 | 14,606 | 13,680 | 12,905 | - |
| | 2층 | 13,529 | 14,944 | 14,476 | 13,530 | 12,783 | - |
| | 기준층 | 13,529 | 14,944 | 14,476 | 13,530 | 12,783 | - |
| | 최상층 | 14,067 | 15,321 | 14,829 | 13,868 | 12,822 | 14,548 |

- * 상기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차별로 선택 할 수 없으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동안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또한 상기 금액은 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공급 가격은 확정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 상기 비용은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건물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범위

| 구분 | 확장 전 | 확장 후 |
|-------|-----------------|--------------------------|
| 기 실 | 타일, 내부페인트 | 합판마루, 이트월 연장 |
| 주 방 | 타일, 내부페인트 | 합판마루, 주방가구 연장 |
| 드레스룸 | 드레스장, 타일, 내부페인트 | 드레스장, 합판마루, 도배지 |
| 침실1 | 타일, 내부페인트 | 합판마루, 도배지 |
| 침실2 | 타일, 내부페인트 | 합판마루, 도배지 |
| 침실3 | 타일, 내부페인트 | 합판마루, 도배지 |
| 발코니사시 | 없 음 | 확장실아중창+22mm복층유리 / 비확장실단창 |

■ 기본선택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품목)

- 관련근거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지침」
- 상기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천장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부분은 입주자요청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선택할 수 있음
- 본 주택은 국토해양부의 「동별별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등 · 호까지 예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등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번호 | 품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
| 1 | 문 | 문틀(상부마감판, 문선 포함), 문막, 도어록, 경철,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 | 육실문을 허부 실, 세대현관문을 및 문막, 방화문을 및 문막, FI, 철호 |
| 2 | 바 닷 | 합판마루, 툼바, 갈레받이, 폴리스타일, 현관바닥재,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현관바닥재) |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3 | 벽 | 벽지(초배 포함 및 벽체 마감타일, 타일 등) | 시멘트벽돌, 경량콘크리트판넬,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
| 4 | 천 장 | 벽지(초배 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동림) | 경량천장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
| 5 | 욕 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천장재천장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등, 욕실장 등 인테리어 및 액세서리 일체) |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수, 천장부위 벽 초배미장, 전기설비 배관 · 배선 |
| 6 | 주 방 | 주방가구 및 가구(가스쿠팡 포함, 벽타일, 주방TV, 액세서리류 일체, 살비 수전류) |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 소방관련시설, 살비배관, 주방배기덕트 |
| 7 |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 8 | 일반가구 | 선별장, 드레스룸장, 반침기구(문막 포함) 등 가구 일체 | - |

- * 마이너스 옵션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 함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입주자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잔금납부 이후 시공이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 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행보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용 스스로 징구하여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시공시 시공주체에서 시공한 소생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건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상기 주택은 공급총액의 범위내에서 주택행태입법, 총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별 공회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까지 매인비를 제외한과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이상 분할하여 받을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반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외주택의 분양가격 제정 방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분양 가격을 산정하였음
- 상기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된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10년 동안 해당금액이 제한되며, '주택법, 제41조의2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에서 2008. 8.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회복방안'에 의거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세대원 개인연계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됨
- 중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
- 세대별 개인연계 중 주차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복도, 전실, AD, PD, 벽체공용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실, 경로당, 경비실, 기계실 등 별도의 면적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109,207A 18세대, 109,244B 11세대, 109,290C 11세대, 109,780D 17세대, 109,218E 17세대)**

- 김포시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양용총지형산업단지 외 입주기업 근로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20) 현재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3조제4항에 해당하는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추천한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20)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
- 대상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20)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해당기관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송부한 공문으로 대체)
 - 김포시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양용총지형산업단지 외 입주기업 근로자는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대신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대표직 확인) 1통 제출
- 특별공급 신청자는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여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세대를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일반공급 : 특별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세대)

(2) **3차선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109,207A 5세대, 109,244B 4세대, 109,290C 4세대, 109,780D 5세대, 109,218E 4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3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20)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병 상 미성년자(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 ※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내에 있는자는 제외
-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률의 3%를 특별공급 하되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배정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 단, 3차선 특별공급 모집에 청약접수를 하신 분 중 동 호수 추정대상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검토한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추천 하오니 신청접수 하신 후 추정대상 여부를 경기도시공사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20)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정기준표(신청접수장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변동내역 표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 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특별공급(3차선 특별공급 포함) 신청자에 대한 상거 제 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시 상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만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정기준표(신청서는 경기도시공사 건보주택 및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순위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행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3차선 특별공급 신청자는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여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3차선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세대를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일반공급 : 특별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세대)
- 우선순위 배정표 - 신청시 배정표에 자율작성 및 점수 기재

| 평점요소 | | 총배점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 계 | | 100 | | | |
| 자녀수(1) | 미성년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자녀입장이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 | 영유아 | 10 | 2명 이상 1명 | 10 5 | |
| 세대구성(2) | 10 | 3세대 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
| | | 2세대 | 5 |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 평점요소 | | 총배점 | 배점기준 | 점수 | 비고 |
|---------------|----|--------------------------------|------|--|----|
| 무주택기간(3) | 20 |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
| | |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 |
|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
| 당해시·도 거주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 | | 1년 미만 | 5 | |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3)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20) 현재 김포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2007.11.20 이전)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김포시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2007.11.21 이후)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함
- 우선공급 신청 초과시 낙찰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지역 일반 1순위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우선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세대는 일반 공급대상 세대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 후(주민등록상 확인)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4)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20) 현재 김포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2007.11.20 이전)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
 - 김포시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2007.11.21 이후)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 가능함

- (5) 공통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20)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자족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를 관리함
 - 상기 주택의 당첨자특별공급, 3차녀 특별공급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청약자 본인(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시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행주인등록 분리세대의 배우자도 중복신청 불가함)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함

(6)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구분 | 순위 | 신청자격 | 거주구분 | 접수일자 | 접수장소 및 시간 | 당첨자 발표 및 장소 |
|------------|-----|--|-----------|------------|--|--|
| 특별공급 | - | • 본 공고문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1' 참조 | - | 2008.11.24 | - 접수장소 : 경기도시공사 - 기본주택 | - 당첨자 발표 장소 : 경기도시공사 기본주택 |
| 3차녀 특별공급 | - | • 본 공고문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2' 참조 | 수도권 | 2008.11.24 | - 시간 : 10:00~14:00 | - 동·호수 추첨 및 발표일시 : 2008.11.24(16:00~) |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1순위 | • 청약자족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단, '90.04.28 이전 가입자는 12회이상 납입한 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20)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함) ※ 과거 분양가상한채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 김포시 / 수도권 | 2008.11.25 |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자족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자족 가입자 www.apl2you.com | - 당첨자 발표 • 일시 : 2008.12.04 • 장소 : 기본주택 및 2008.12.04일자 인선일보 게재 |
| | 1순위 | • 청약자족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단, '90.04.28 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 납입한 분) ※ 과거 분양가상한채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 | 2008.11.26 | - 접수시간 : 08:30~18:00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선별면의는 최초 가능성 때문에 응달하지 않으니 이점 양자하시 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 2순위 | • 청약자족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단, '90.04.28 이전 가입자는 3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한 분) ※ 과거 분양가상한채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 | 2008.11.27 | | |
| | 3순위 |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 까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과거 분양가상한채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 | 2008.11.28 | - 국민은행 인터넷 청약 (www.kbstar.com) - 접수시간 : 08:30~18:00 | |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청약 가능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방법

- 특별공급 : 김포시 사업지를 두고 있는 '상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양촌지형산업단지)와 입주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접수일(2008.11.24)에 접수장소 (경기도시공사 기본주택)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제4항에 해당하는 부훈대상자' 청약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은 해당 기관에서 경기도시공사에 통보한 해당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포기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3차녀 특별공급 :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접수일에 당사 기본주택에서 접수하며,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제 2, 3순위 : 각 주택형태로 총별·동별·호별 구분 없이 김포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김포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에 접수하며 선순위 미달시에만 차순위를 접수함
- 각 주택형태 일반공급 세대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공급하며, 김포시 주택건설지역 1년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공급 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추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김포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수가 발생할 경우 동일 순위내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차순위 공급방식 또한 이하 같으며,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는 접수하지 않음)

■ 청약자격별 공급세대수

| 구분 | 주택형 | 공급세대수 | | | | | | | 계 |
|---------|----------|----------|-----|-------|-------|--------|------------|------|-----|
| | | 특별공급 | | | | 일반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일반공급 | |
| | | 3차녀 특별공급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 | | |
| 국 민 주 택 | 109,207A | 5 | 3 | 2 | - | 18 | 15 | 144 | 182 |
| | 109,244B | 4 | 2 | 1 | 1 | 11 | 9 | 81 | 105 |
| | 109,290C | 4 | 2 | 1 | 1 | 11 | 9 | 81 | 105 |
| | 109,780D | 5 | 3 | 2 | - | 17 | 15 | 136 | 173 |
| | 109,218E | 4 | 2 | 1 | 1 | 17 | 15 | 135 | 171 |
| | 112,776P | - | - | - | - | - | - | 7 | 7 |
| | 계 | 22 | 12 | 7 | 3 | 74 | 63 | 584 | 743 |

※ 상기 일반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접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민주택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국민주택은 청약자족 가입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자격 입력(가) 오류

1.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그러므로 청약자께서는 청약 신청 이전에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기간,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을 확인하여 청약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자격 기재요령

- 거주지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군 단위의 거주지역주택건설지역
- 거주개시일 : 상기 거주지역주택건설지역의 전인일자를 기재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확인
- 무주택세대주 기간 : 무주택기간과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한 세대주 인정기간을 결합하여 기재
(예 시) ① 총 세대주 인정기간(2년), 무주택기간(3년) ⇒ 무주택세대주기간 : 3년 ② 총 세대주 인정기간(6년), 무주택기간(9년) ⇒ 무주택세대주기간 : 6년
-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의 동일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함(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분양가측수 : 청약가점제 항목 중 분양가측 인정기준과 동일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함
- 3.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청약자격이 상이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당첨서류,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금지 및 당첨자관리 등 불이익을 받음
- 4. 청약신청서 청약자격 척요 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접수은행 및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 1)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2)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2)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3)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4) 주택공유비율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자분을 취득한 사실이 반영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노부모부양 세대주 우선공급대상자의 경우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 | | |
|-----------------------|--|---|
| 인터넷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청약 서비스 체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구 분 | 국민은행(舊 주택은행 포함) 청약자측 가입자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청약자측 가입자 |
| 이용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측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제3순위 :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병행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계산 분(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 |
| 이용방법 및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12you.com) 접속 |

■ **공급신청서 구비사항(노약자, 장애우 등 인터넷 취약자 청구 접수시에 한함)**

| 구 분 | 구비사항 |
|----------------|--|
| 본인 신청서(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1·2순위자 : 청약자측 가입은행 비치, 3순위자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자측 통장(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정(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본인확인증표(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제3자 대리 신청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청약자 본인의 본인확인증표 제출 생략 가능 |

- * 특별공급(3차년 특별공급 포함) 신청자의 공급신청 시 구비사항 등은 본 공고문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을 참조
- * 신청자의 최초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문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청약접수은행 및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3순위 청약신청금**

| 구 분 | 전주택원 | 신청금 납부방법 |
|-------|-------|---|
| 청약신청금 | 100만원 | 가능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당구접수 대상자에 한함) |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8.12.05) 이후 평일 09:30~16:3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 신청한 국민은행 본·지점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당첨자는 시보 제출), 본인확인증표(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청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 시 : 상기 본인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장)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제3자의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 청약자 본인의 본인확인증표 제출 생략 가능
- 제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나 청약 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 받아 계약 체결하여야 함(단, 인터넷청약자 및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인해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이체 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등·호수 결정**

| 구분 | 선정방법 |
|-------------------|---|
| 특별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에 사업자를 두고 있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양촌산업단지 외) 입주기업 근로자 및 해당기관에서 경기도시공사로 추천한 자 중 해당 일차에 경기도시공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접수한 분에 한하여 신청자 입회하여 공개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하며, 신청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시공사에서 선정된 추천인이 추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될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3차년 특별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시공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접수한 분 중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신청자 입회하여 공개추첨에 의해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하며, 신청자가 입회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시공사에서 선정된 추천인이 추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될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은행 컴퓨터 추첨에 의해 청약자격 가입은행 구분 없이 각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별 일반 1순위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각 순위별로 입주자를 선정하지 못한 일반공급 제1, 2순위자 중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액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저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일순위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수도권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고,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시 주택행렬 일반공급세대수의 20%이하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위세대 또는 계약위스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일에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특별공급 당첨자 중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 특별공급 및 3차년 특별공급 동·호수 추첨순서 결정방법 : 청약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추첨순서를 먼저 추첨한 후, 추첨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동·호수를 추첨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당첨 당첨자) : 2008.12.10 ~ 2008.12.12 (3일간, 09:30~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경기도시공사 견본주택
-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시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당첨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당첨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시 구비사항

| 구분 | 구비사항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인터넷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2통 (공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계약금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저가인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내부거주지역, 세대주 기간,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초본 1통 - 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증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 및 공급계약 체결 관련 각사계약장소에 비치) |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당첨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차입 기준, 기록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증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제3차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계약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 * 상기 제출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1.20)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동·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신청, 배우자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 등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무주택세대주, 거주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에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자측의 책임은 불기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계약체결 후에도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 또는 재당첨 제한 등 당첨사실에 따른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권 박탈 및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하며, 당첨된 청약자측의 책임은 불기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 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신청자격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청자 포함 및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된 청약자측의 책임은 불기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자측의 책임은 불기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유한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단지내 마을 명칭, 아파트특색의 자연, 로고부착 및 등 번호는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색채시스템위원회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 될 예정으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예정일 : 2010년 12월중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자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도장·가구·타일·위생기구 공사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기획재정부(전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개

-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의 실제 사용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 천원)

| 구분 | 총액 | 구분 | 총액 | 구분 | 총액 | | | | |
|-----|--------|------------|-----------|----------|------------|-----------|--------|-----------|-----------|
| 택지비 | 택지대입인가 | 53,134,958 | 건 = | 철근콘크리트공사 | 27,140,294 | 공사비 | 위생기구공사 | 2,295,209 | |
| | 기간이자 | 1,588,735 | | 용접공사 | - | | 기 | 승강기계공사 | 1,153,105 |
| | 필요적경비 | - | | 조적공사 | 1,731,993 | | 계 | 난방설비공사 | 1,049,580 |
| | 그밖의 비용 | 1,387,635 | | 미장공사 | 1,266,468 | | 설 | 가스설비공사 | 600,840 |
| | 계 | 56,111,328 | | 단열공사 | 813,797 | | 비 | 자동제어설비공사 | 130,014 |
| | | | | 방수·방습공사 | 1,311,557 | | | 특수설비공사 | 1,202,047 |
| | | 도공사 | 1,480,877 | | 목공사 | 2,177,374 | 그 | 전기 | 4,502,556 |
| | | 흙막이공사 | - | | 가구공사 | 2,693,205 | 밖의 | 정보통신 | 3,145,854 |
| | | 비밀안보호공사 | - | | 금속공사 | 2,045,645 | 공중 | 소방설비 | 4,324,702 |
| | | 옹벽공사 | - | | 지붕 및 홀통공사 | 299,046 | 그.. | 일반관리비 | 2,859,531 |
| | | 석축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비 | 토 목 | 우·오수공사 | 579,295 | 상 사 비 | 착 공 사 | 창호공사 | 3,883,389 | 의 의 공 사 비 | 이 용 | 3,187,092 | | |
| | | 공동구공사 | - | | | 유리공사 | 745,143 | | | 계 | 92,518,184 | |
| | | 지하차수조 및 급수공사 | 9,542 | | | 타일공사 | 1,838,827 | | | 설계비 | 2,521,963 | |
| | | 도로포장공사 | 42,060 | | | 돌공사 | 2,380,902 | | | 감리비 | 2,851,008 | |
| | |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 | | 도장공사 | 669,063 | | | 간 부 대 비 | 일반분양시설경비 | 1,865,636 |
| | | 정화조시설공사 | - | | | 도배공사 | 3,187,578 | | | | 분담금 및 부담금 | 278,836 |
| | | 조경공사 | 3,076,265 | | | 수장공사 | 680,685 | | | | 분상비 | - |
| | | 부대시설공사 | 60,141 | | | 주방용구공사 | 2,476,461 | | | | 기타사업비용 경비 | 16,827,833 |
| | | 공동가설공사 | 1,189,465 | | | 잡공사 | 600,980 | | | | 소 계 | 18,972,305 |
| | | 건 축 | | | | 가시설물공사 | 1,502,197 | | | 기 계 설 비 | | 급수설비공사 |
| 지정 및 기초공사 | 514,467 | | | 급탕설비공사 | 703,904 | 그밖의 비용 | 5,087,312 | | | | | |
| 철골공사 | - | |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1,386,744 | 합 계 | 178,062,100 | | | | | |

■ 세대내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안내

- 노약자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의 가족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1.20)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해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 또는 원가로 설치해드립니다(신청후 원상복구는 불가함)
 - 무료설치: 공동육실구조변경바닥단체제, 출입문 규격 확대, 좌식샤워실 설치 - 원가제금: 좌식 싱크대
 - * 노약자 편의시설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만 65세 이상 직계가족이 동세대인 주민등록등본 1통(2008.11.20일 이후 발급받은) 한화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1통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번호: 국민은행 계좌번호: 965601-01-331830, 예금주: 경기도시공사
- 납부방법: 지정된 분양대금 및 잔금은 납부일에 해당은행 본·지점에 직접 가서서 무통장 입금(타행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분양대금 납부일정 및 금액 등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일부 중도금 대출가능 범위내에 대하여는 대출 가능 대상자에 한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일선하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자 본인부담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형,관)에는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방식단위인 제미터(㎡)로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면적㎡) × 0.3025 또는 행면적㎡) ÷ 3.3058)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내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 이후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될 시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 주택에 당첨된 자는 입주자끼리 무주택 세대주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재외국인이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보통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소명기간(경기도시공사에서 발표한 날)무주택소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해당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이 아파트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부정리절차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전등기시 대지공유자본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상호 정산합니다.
- 1. 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자중 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내용을 경기도시공사에 서면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서 영의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비용(신용보증료, 대출수수료, 인차대 등)은 공급계약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경기도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 변경 또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 외곽 및 산업단지 내의 기반시설도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악취, 공해물질 등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하수는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되며, 처리비용은 향후 재정을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규칙에 의거 사용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세대 자녀 수용학교는 학운초등학교(가칭)와 양곡중학교(나) 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변경이 있을시 통학학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내 학교 등 교육시설은 김포양촌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상공은 김포공항 비행항로와 인접하여 항공기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본 공사 현상 및 인근을 방문하여 단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히, 단지 북쪽의 유지와 동쪽의 용역은 일부세대에서 보므로 해당 방문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도로와 단지에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진동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 주거동 앞, 뒤쪽으로 어린이 놀이대, 운동시설 등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백, 은행, 호수별로 단지배치 및 주거동의 위치에 따라 일조량, 조망, 소음 등의 환경면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및 기본주택을 참조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기거·전기설·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의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쪽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훈련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골산은 사유지입니다.
- 단지 남쪽에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안(아파트)31세대가 건설 중입니다.
- 단지내 부대·보리시설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내부시설물의 재공여부와 엔터테인먼트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중동통행형이며, 주차장이 지대로 계획되어 있어 이사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지하 PT중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9동 201호 앞 부지는 통출입구보다 높으며, 부지의 단차는 경사로 처리 예정입니다.
- 단지평형 및 동번호 등 약벽표시 내용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의 조정은 건보주택의 단지모형 및 조감도와는 일부 다르게 시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서버스면적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건보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물리,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시에 한하여 입주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보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유사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약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모방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조감도, 전시모형 및 건보주택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으로 규격, 색상, 질감, 수량 등이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보주택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철거하며, 철거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건보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카탈로그, 모형 및 이미지 CG 등에 표현된 수목의 위치 및 종류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별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상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축벽, 인연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별코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의 문양은 현행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사시가 설치되는 약벽에는 단열시공이 되어있지 않으며 입주자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코니 사시를 설치하는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 등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이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건보주택내에 전시된 연출용 전시품, 가구 및 조명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물로서 실제로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커뮤니티 모형도와 분양홍보물(카탈로그 등)에서 보여주는 커뮤니티센터 내부의 비품, 집기, 가구, 사설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활용성을 예시한 것이며 실제로는 각 실로 구성된 공간만이 제공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시공사에서 통보하는 입주자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는 일정금액의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단, 퇴거시 환불합니다.)
- 미감각되는 평형별로 상이하며 건보주택에 없는 109,290C형, 112,776F형의 마감재는 건보주택의 109,207A형과 109,244B형의 마감재를 참조하시고, 109,244B형의 마감재는 건보주택의 109,780D형의 마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등은 카탈로그 및 전시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 내부 벽체 중 1개소가 기번형벽체구조로 109,207A형, 109,290C형, 109,218E형은 기설-침실' 사이이며, 109,244B형, 109,780D형, 112,776F형은 침실-침실' 사이입니다.
- 최상층 세대(109,244B형, 109,290C형, 109,780D형, 109,218E형)는 다락이 설치되며 주방 기설 등 의 벽면에 다락 계단 설치로 인해 뱃변의 현내나 주방

가구의 배치 길이가 일부 달라지며, 기존층 세대에 설치되는 일부 가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다락의 바닥은 합판마루로 마감되나 난방설비가 미시공됩니다.)

- 최상층 다락 출입은 시공시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접이식 계단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화장 전·후의 평면에서 대비공간은 문은 철재방화문으로 설치됩니다.
- 아파트 구조는 기둥·벽·시공조 방식으로 세대내부의 심 구획벽체는 웬벽, 조적일부의 견식벽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을 고려하여 에어컨실외기를 발코니의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가실과 안방에 설치됩니다.
- 본 단지는 발코니 확장을 감안한 개별난방용량이 확보되었습니다. 단, 확장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면적 기준입니다.)
- 각 세대 현관 입구의 복도(전실)는 공용공간으로 각 세대에서 방화문 등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 본 단지는 개별난방으로 별도의 발코니 벽면에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며, 입주전 동급생능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시에는 셀빙 온도조절기도 바뀝니다.
- 공용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고, 부부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됩니다. • 주방발코니에는 개별보일러, 대비공간에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전기분전함 및 전열교환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시스템은 전열교환방식이며, 급기는 각방과 거실에 설치되고 배기는 가실과 복도에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주방의 가스배관은 견본주택에는 설치되지 않지만, 규정상 현장시공시 노출배관으로 설치됩니다.
- 주방 가스배관 설치로 인해 주방기구 상부장의 내부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우수용 선통통이 설치되는 곳이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통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락에서도 청문을 이용하여 출입할 수가 없으며,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경기도시공사 사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와 (주)태영건설이 상호 협력하여 좋은 아파트를 시공하고자 '자연&' 과 '태시양' 브랜드를 공동 사용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커달로그 및 견본주택의 게시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 등 경기도시공사 견본주택 내 외부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상황(위인테리어, 확장, 사시, 부동산중개 등)는 경기도시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 시공자 : (주)태영건설, (주)KCC건설, (주)동양건설산업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무동 252-4번지 외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방문 고객께서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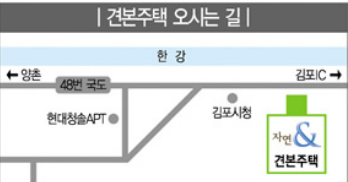
■ 분양문의 : 김포양촌 자연& 견본주택(☎1588-7804)

■ 인터넷 및 ARS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므로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 국 민 은 행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신청하신 분) |
|-----------|-------|---|---|
| 인터넷 | 이용방법 |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시아(비청약)지점 → 당첨확인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 | 이용기간 | 2008.12.04 ~ 2008.12.13 (10일간) | 2008.12.04 ~ 2008.12.13 (10일간) |
| 전화(ARS) | 이용방법 | •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음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연속하여 눌러주세요. | |
| | /전화번호 | 1588-9999 (서비스 번호 : 701) | 1369 (서비스코드 : 5#) |
| | 이용기간 | 2008.12.04 ~ 2008.12.13 (10일간) | 2008.12.04 ~ 2008.12.13 (10일간)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 상 | 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 |
| | 제공일시 | 2008.12.04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우리 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기획재정부 (전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분양문의 1588-7804